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의약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64호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다. 제출일자 : 2025. 1. 23.

라. 회부일자 : 2025. 1. 23.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협의한 결과, 지원대상 기준 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기준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기준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4.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19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¹⁾ 120%이하에서 100%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준중위소득 <u>120%</u>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 <u>100%</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 7.18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그 간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최종 지원대상자 기준이 결정되어[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406(2024.10.28)], 금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임.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청년 정책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끝.

구강보건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9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text{생계급여액} = \text{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text{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56,568	323,664	311,162	311,139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